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58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김문수 · 이주희 · 김원이
이훈기 · 남인순 · 이수진
한준호 · 정진욱 · 박지원
박용갑 · 강경숙 · 정일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중·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

조의4제4항 · 제21조의5 신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u>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u> <u>② 교육부장관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u> (생략)	<u>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u> (현행 제21조의5와 같음)